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10 호 2023. 7. 13.(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301회[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38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40회[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28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42회[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2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63회[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81회[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84회[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86회[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7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90회[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이 협의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9조(회의 개최)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선임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 임무

제1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충처리
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3.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4.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5.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6.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업무방법의 개선

7.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0.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4. 협의회 규정의 제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전 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2. 그 밖에 조합원과 관계되는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따른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는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1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2조(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3조(고충처리 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24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고충처리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5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주무부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근로자총괄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7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한다.

제28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차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협 의 사 항	
보 고 사 항	
의 결 사 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참 석 위 원

근 로 자 위 원		사 용 자 위 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고충처리 위원
		성명	소속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에 따라 공무원노사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공무원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복구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제1조 ~ 제4조)
 - ▶ 규정 제정의 목적 및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제2장 협의회 구성(제5조 ~ 제8조)
 - ▶ 협의회 위원구성 및 임기, 신분에 관한 사항
- 제3장 협의회 운영(제9조 ~ 제14조)
 - ▶ 회의 개최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장 협의회 임무(제15조 ~ 제20조)
 - ▶ 협의회 협의 및 의결 대상 등에 대한 사항
- 제5장 고충처리(제21조 ~ 제25조)
 - ▶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 제6장 보칙(제26조 ~ 제28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3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7. 12.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전력용 콘크리트 전주 2본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39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25m²
 - 2) 영구: 0.4m²
 - 나. 기 간
 - 1) 일시: 2023. 7. 12. ~ 2023. 7. 13.
 - 2) 영구: 2023. 7. 14. ~ 2038.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8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22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위치 : 북구 양정동 538-16번지 일원]

1. 사업계획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변경협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합니다.
2. 사업 착공 전 본 허가구역 내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허가구역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타 법령 이행사항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인·허가·승인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추진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해소하여야 하며, 기존도로와 신규 개설되는 도로는 단절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게 준공 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붙임 1~3】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 준공검사(협의) 하여야 합니다.

【붙임1】 문화체육과 협의사항

○ 문화재 관련 협의 등

지정문화재	해당없음
매장문화재	해당 없음. 단, 사업시행 중 미확인 유구나 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 시행자의 책무), 제17조(발견신고)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2】 환경위생과 협의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소3-228호선)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검토의견
(양정동 538-16번지 일원, 양정동 일원(소3-228호선) 도로 개설공사)

관련법	검토의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해당 사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신고 대상 규모미만이나,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예: 공사현장 살수, 방진막 설치, 통행도로 청소 등)를 하여 주변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때에 공사장을 운영하는 자는 작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주변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거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착공 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공사장 방음시설(높이 3m이상의 방음벽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향타기·향발기 또는 향타향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착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물환경보전법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유

제15조	<p>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p> <p>○ 강우 시 공사를 자제하고 절·성토면은 덮개를 덮어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함.</p>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p>○ 사업시행 중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위생과로 신고하여야 하며,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하여야 함.</p>

【붙임3】 환경미화과 협의사항

관련 법	검토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기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시행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또한, 발주자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환경부 고시 제2014 - 33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4 - 105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건설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및 별체·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 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므로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기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시행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	○ 공사기간 내 투입되는 각종 건설장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월 평균 50kg이상의 폐유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 오일교환 등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차량정비소등에서 정비할 경우는 제외 ※ 페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건설폐기물 철거 작업 시는 별도 신고 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 기존 “지정폐기물배출자신고”를 시행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조의2제7항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 처분 부담금)	○ 사업장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1. 정기신고- 계속사업장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 (2019년 최초 신고 대상) 2. 건설공사 등에 따른 사업장 중 해당 폐기물 종료된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한국환경공단에 신고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환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사항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	북구 양정동	538-16	538-16	도	3,742	3,742	95	울산광역시						공
2	북구 양정동	541-38	541-38	도	6	6	6	서일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5길 11(양정동)					사
3	북구 양정동	542-2	542-10	전	104	83	83	김상선(3/18) 김현철(2/18) 김은송(2/18) 김수경(1/8) 김옥경(1/8) 김민경(1/8) 김태형(1/8) 김나연(2/18)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35번길 51, 102동 1613호(옥동, 성도야파트)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 102동 2244호(우정동, 마제스타워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108동 1101호(구영1주공아파트)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38길 19-43, 202호(구암동)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5길 4, 701호(성안동)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2길 29, 202호(성안동, 향진도파크빌2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18길 3-11, 102호(역사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8길 3-18(상도1동, 더브라운)				사	
			542-2	전		21				-				
4	북구 양정동	546-27	546-27	전	91	91	91	최해락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54					사
5	북구 양정동	543-4	543-7	전	205	199	199	유인도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51					사
			543-4	전		6				-				
6	북구 양정동	544-2	544-6	대	114	12	12	송대용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13-9(양정동)					사
			544-2	대		102				-				
7	북구 양정동	544	544-5	대	151	4	4	서연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골화1길 55, 101동 1903호(골화강변월드메르디앙)					사
			544	대		147				-				
8	북구 양정동	545-10	545-27	전	198	52	54	전일숙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13-10(양정동)					사
			545-10	전		146				-				
9	북구 양정동	545-13	545-13	도	11	11	11	이용달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5-4					사
10	북구 양정동	545-1	545-23	전	564	149	149	최정순(1/2) 김동화(1/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7길 9-3(양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523-2					사
			545-1	전		396				-				
			545-24	전		4				-				
			545-25	전		15				-				
11	북구 양정동	545-6	545-26	대	390	14	14	유병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5-6		병영농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52-9(상방지소) (채우자 : 유병환)	근저당권	사
			545-6	대		376				-				
12	북구 양정동	773-21	773-33	도	6,866	25	25	국(건설부)						국
			773-21	도		6,332			-					
13	북구 양정동	568-4	773-34	도	70	509	509	유정환	울산광역시 중구 양정동 603-5 양정아파트 210호					사
			568-4	전		12				12				
			568-10	전		58								
합 계							75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28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북구 양정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2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28호선)사업

나. 명 칭 :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소로3-228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38-16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117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5.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과 같음

7. 공공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관리청에 귀속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건설과(☎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42호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고 시 일 : 2022. 7. 13.
2.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중산공업로)
※ 붙임(조서 및 도면) 참조
4. 변경사유 : 도로구간 (주도로) 연장 설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52-241-72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위계	기초 간격	기초 번호	변경사유	고시일자 (효력발생일)
		시점	종점	중심선							
변경전	박상진1로	송정동 1143	송정동 1094-86	도면 참조	1,633	30.5	로	20	1~142	주도로 연장설정	2023.07.13.
변경후		송정동 1143	송정동 786-7	도면 참조	1,656				1~166		

현황도면 (변경 전)



도로명주소 기본도 (변경 전)



현황도면 (변경 후)



도로명주소 기본도 (변경 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963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명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기간 : 2023. 7. 10. ~ 2023. 7. 20.
2. 모집인원 : 3명
3. 위원임기 : 3년(위촉일로부터)
4. 활동내용
 -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 기타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5. 선정기준
 - 자격
 - 지명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
 - 구의 특성과 역사, 문화 및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위원 선정일 기준)
 - 한정후견인 등 행위무능력자
 -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된 자
 - 품행이 단정하지 않거나 공익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6. 신청서식 :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게재 및 민원지적과 비치
7.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복구청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sngddrn@korea.kr)
 - ※ 우편 : (44248)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복구청 민원지적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담당) ☎ (052)241-7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학 력	
주 소			
직장(직업) 및 전화번호	직장명(직업):	직위:	
	☎ 직장 :	자택 :	휴대폰 :
E-mail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요경력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9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732-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51호선)사업
 - 나. 명 칭: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가. 당 초: 도로개설 L=108.6m, B=8m, A= 867m²
 - 나. **변 경**: 도로개설 L=110m, B=8m, A= 913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 6. 25. ~ 2024. 6. 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토지 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 변경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 (☎052-241-7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9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9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사업
 - 나. 명 칭: 신천동 소2-84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가. 당 초: 도로개설 L=82m, B=8m, A= 675m²
 - 나. **변 경**: 도로개설 L=82m, B=8m, A= 66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 6. 18. ~ 2024. 6. 1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토지 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 변경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 (☎052-241-7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9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7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7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05-5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76호선)사업
 - 나. 명 칭: 신천동 일원(소로2-176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가. 당 초: 도로개설 L=32m, B=8m, A= 310m²
 - 나. **변 경**: 도로개설 L=32m, B=8m, A= 37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3. 6. 15.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토지 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 변경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7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990호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명을 현행화하고,
-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명 현행화(안 제2조)

- (당초)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 → (변경) 국군방첩부대의 장
- (당초)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 → (변경)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

나. 간사 간단명료화(안 제6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신설(안 제8조)

-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구(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통합방위법」 제7조 준용)

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명시(안 제9조)

마.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내용 별표로 변경(안 별표 1, 2)

바.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신설(안 제1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안 제3조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

3. 근거법령

가. 「통합방위법」 제7조, 제9조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4조, 제16조~제18조, 제2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22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명을 현행화하고,
-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명 현행화(안 제2조)
 - (당초)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 → (변경) 국군방첩부대의 장
 - (당초)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 → (변경)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
- 나. 간사 간단명료화(안 제6조)
-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신설(안 제8조)
 -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구(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통합방위법」 제7조 준용)
- 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명시(안 제9조)
- 마.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내용 별표로 변경(안 별표 1, 2)
- 바.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신설(안 제10조)
- 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3. 관계법령

가. 「통합방위법」 제7조, 제9조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4조, 제16조~제18조, 제2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7월 중

바. 입법예고 : 2023. 7. 13. ~ 8. 2.(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9호 중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국군방첩부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울산출장소장”을 “울산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회외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제2항 중 “자료”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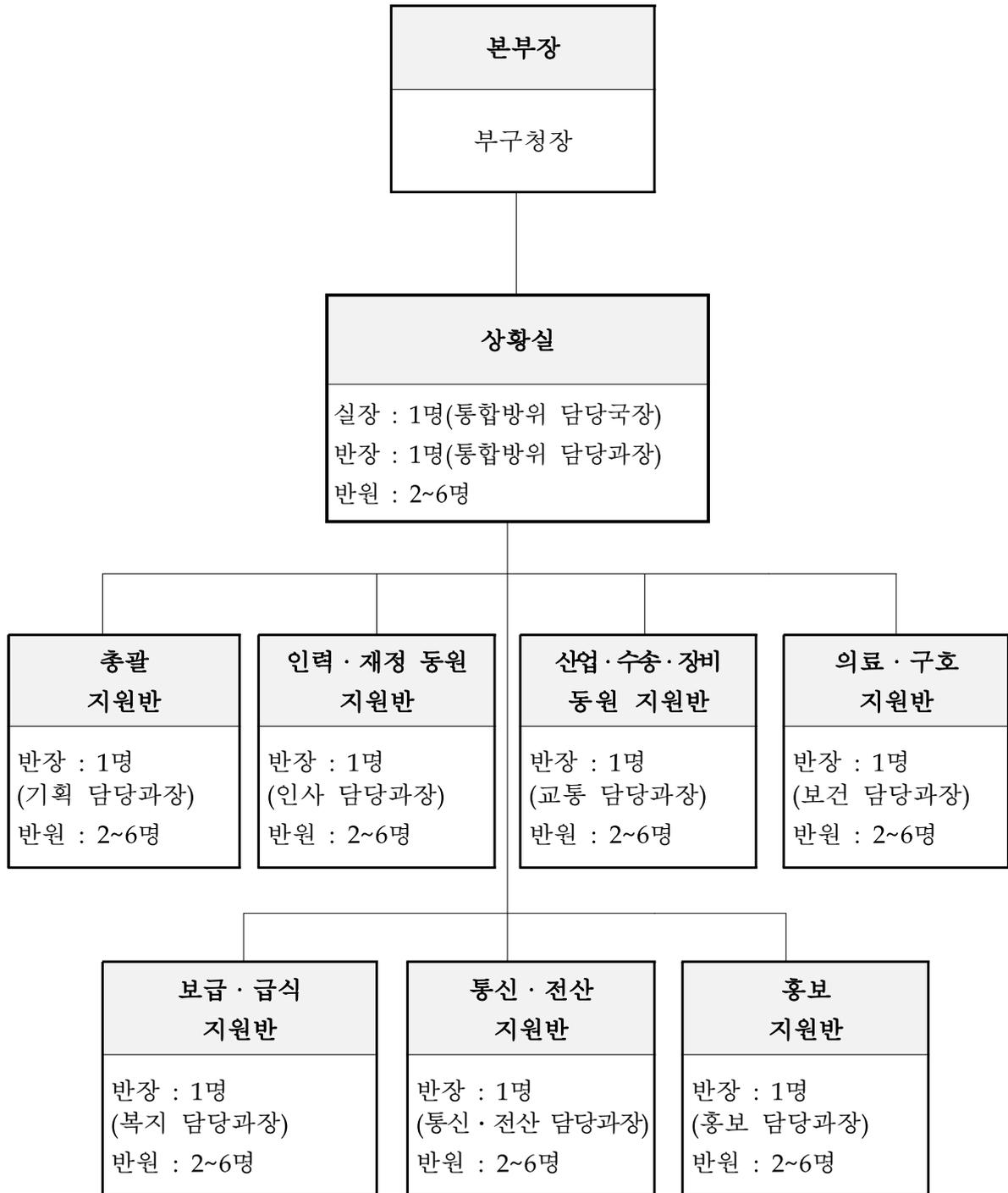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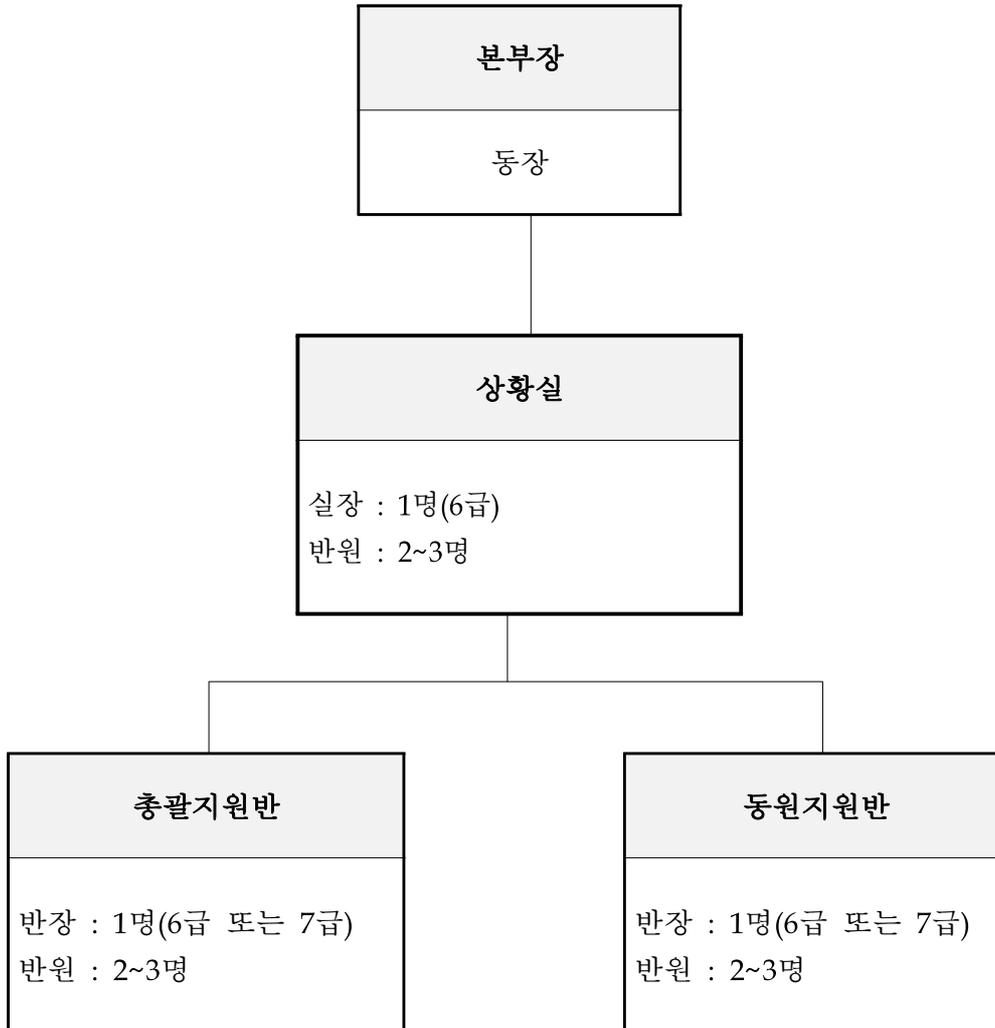
[별표 1]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조제4항 관련)



[별표 2]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조제4항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필요한</u> ----- -----.</p>
<p>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② (생략) ③ <u>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u> 1. ~ 8. (생략) 9. <u>울산지역 국군 군사안보지원부</u> <u>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u> 10. <u>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이 추천하는 관계자</u> 11.·12. (생략) 13. <u>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자</u></p>	<p>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 <u>국군방첩부대의 장</u> ----- 10. ----- <u>울산지역본부장</u> ----- 11.·12. (현행과 같음) 13. ----- <u>사람으로서</u> ----- ---- <u>사람</u></p>
<p>④ (생략) 제6조(간사) ① <u>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간사를 두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u>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u> 1. <u>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u></p>

1. 민방위담당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교육훈련 및 민방위대 지원

라. 주민신고 조직 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의 작전분야 안전상정

나. 통합방위훈련, 작전계획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3. 예비군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동원장교로 한다.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시 예비군 지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 및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신 설>

제8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청 본부장은 부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사람으로 -----.

제8조(협의회 의 통합·운영) ①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구청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반장을 포함하여 2명부터 4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과장 및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 설>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⑤ ----- 필
요한 -----
-----.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제11조(운영세칙) -----
 ----- 필요한

 -----.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 **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 **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 ⑧ (생략)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 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

(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